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0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1월 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지역·지구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마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를 “법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및 절토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 가. 사업시행자
  - 나. 사업시행기간
  - 다. 개량 농지의 위치

라.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한다)

마.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바.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한다)

2. 변경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농지개량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농지개량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해야 한다.

제4장제2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변경(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5서식에 따른 협의요청서 또는 변경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7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가. 지정·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1부

가) 지역등의 위치 및 지정·결정 또는 변경의 목적

나) 지역등의 토지이용계획

다) 환경오염 예측 및 그 방지대책

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의견이 명시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과 그 조치계획

2) 지역등의 지정·결정 또는 변경을 하려는 토지 및 농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농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내역서 1부

3)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30조제2항제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 결과(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말한다) 1부

7)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나. 지정·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다. 지정·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포함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2. 제1호 외의 농지인 경우

1)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에 따른 서류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제6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공공단체의 범위란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농요(農謠)의 보전을 위한 비영리단체

별표 2 공공단체의 범위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 가.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 가. 농지개량행위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이용 방해, 폐지·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사의 유출 및 배수·통풍 장애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나. 농지개량행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구분	기준
가. 객토 (흙 옮기기)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 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나. 성토 (흙 쌓기)	<p>1)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p> <p>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을 혼합한 토석, 깃벌흙, 오염된 침전물 등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한다.</p> <p>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토양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1), (2), (3)의 토양성분 분석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항목별 기준을 준용한다.</p>

- (1) pH: 5.0 이상 7.5 이하
- (2) EC(dS m<sup>-1</sup>): 2.0 이하
- (3) 모래 함량(%): 70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지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만 준수해도 된다.

-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2) 1)나)(1)부터 (3)까지의 토양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3)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지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

다. 절토  
(흙 깎기)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토질·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시·군·자치구	7일
			시·도	10일
			농림축산식품부	15일

신청인 (철회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농지면적	소재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등	필지
	합계(m <sup>2</sup> )		답		전		

신고증 또는 허가증 번호	제 호	신고증 또는 허가증 발급일자	년 월 일
---------------	-----	--------------------	-------

허가(신고)기간	
----------	--

취소·철회사유	
---------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	총 납부금액(₩ 원)
-----------------	-------------

「농지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51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51조제4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  
 제51조제5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철회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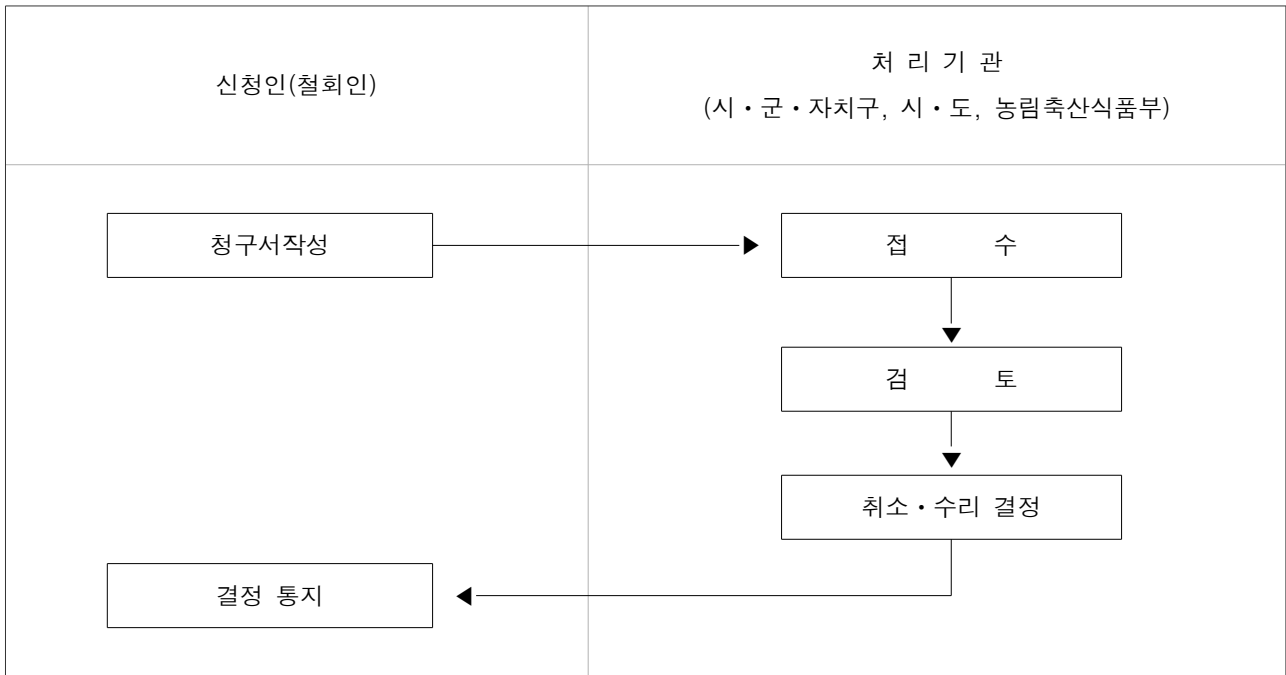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농지전용허가·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및 농지전용신고·타용도 일시사용신고·농지개발행위의 신고 수리의 취소 권한

구분		시·군·자치구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 30만㎡ 미만	30만㎡ 이상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	-	-
농지전용신고 수리의 취소		○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 수리의 취소		○	-	-
농지개발행위의 신고 수리의 취소		○	-	-



#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농지개량 신고 결과 등의 문서 송달에의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농지현황	위치(지번)					
	면적(m <sup>2</sup> )	구분	계	농작물 경작 농지		시설 부지 (개량시설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업진흥 구역		답	전	
		농업보호 구역				
		농업진흥 지역 밖				

개량내용	개량 행위 <input type="checkbox"/> 성토 <input type="checkbox"/> 절토				
	개량 규모	높이·깊이 (m)		면적(m <sup>2</sup> )	
	성토재 종류 및 출처 (성토의 경우만 작성)	종류	<input type="checkbox"/> 자연상태 토양 <input type="checkbox"/> 순환토사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재활용토사		
		출처	채취장소 취급업체		
	주변 피해방지 조치	<input type="checkbox"/> 흙막이 또는 옹벽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시설 설치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량목적 (변경사유)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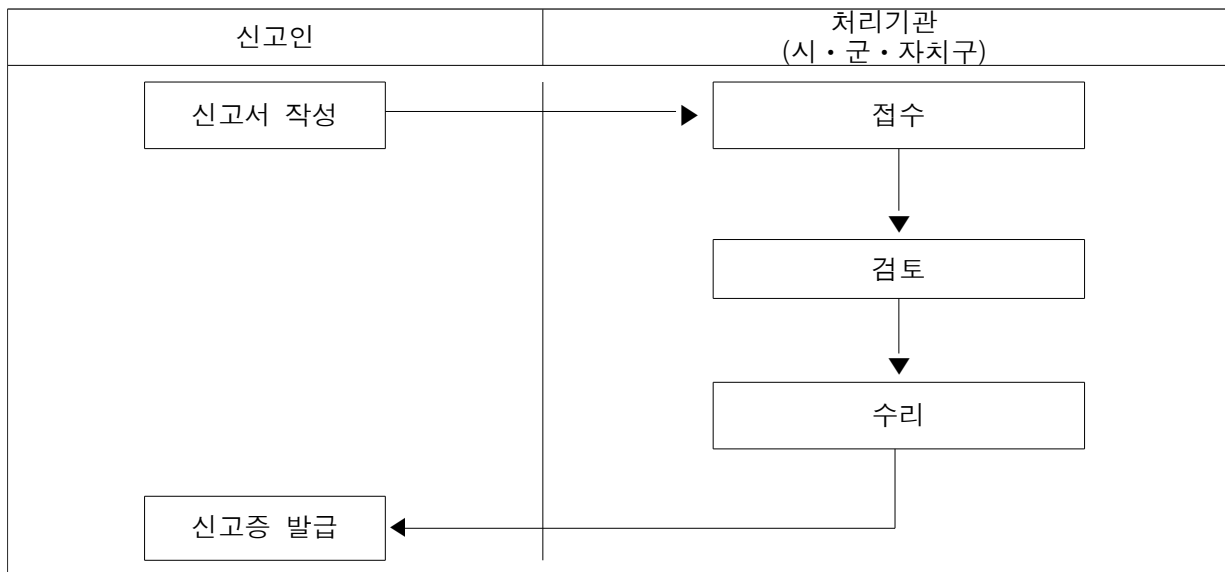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p>1. 신고</p> <p>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사업시행자</li><li>2) 사업시행기간</li><li>3) 개량 농지의 위치</li><li>4)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합니다)</li><li>5)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li><li>6)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ul> <p>나.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p> <p>다.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p> <p>2. 변경신고</p> <p>가. 제1호 각 목의 서류(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합니다)</p> <p>나. 변경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





제 호

## 농지개량 신고증

1. 성명 (명칭) :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3. 주소 :
4. 농지개량 신고내역

소재지			지번	용도 구분	지목	필지 면적 (㎡)	개량행위 (성토, 절토)	개량규모	
시·군	읍·면	리·동						높이·깊이 (m)	면적 (㎡)

「농지법」 제4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개량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직인

#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 ]협의 [ ]변경협의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사업시행자	성명(명칭)					
	주소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 )					
협의대상 농지	위치	번지 외 필지				
	면적 (㎡)	구분	계	답	전(과)	농지개량시설부지 등 사실상 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비농지 포함)	㎡ (농업진흥지역 :      ㎡)					
협의요청일자	년 월 일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업시행 근거 법령 및 사업명						
협의 목적						

「농지법」 제4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을 위한 [ ]협의 [ ]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1.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 가. 지정·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등”이라 합니다)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1부
      - 가) 지역등의 위치 및 지정·결정 또는 변경의 목적
      - 나) 지역등의 토지이용계획
      - 다) 환경오염 예측 및 그 방지대책
      - 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의견이 명시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과 그 조치 계획
    - 2) 지역등의 지정·결정 또는 변경을 하려는 토지 및 농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농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내역서 1부
    - 3)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 결과(「농지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농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말합니다) 1부
    - 7)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 나. 지정·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 가목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 다. 지정·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포함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
    - 1) 가목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2. 제1호 외의 농지인 경우
  - 1)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에 따른 서류
  -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첨부  
서류

### ◇개정이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개량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농지이용계획 수립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2호, 2024. 12. 31. 공포, 2025. 1.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개량 기준 및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며,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 사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식물공장 입지 대상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범위 신설(안 제3조의3 신설)

수직농장·식물공장이 해당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입지할 경우 그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범위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정함.

나. 농지개량 기준 및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별표 4 신설)

1) 농지개량의 기준을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할 것, 농지개량 행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 및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함.

2) 성토 및 절토에 대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에 개량 농지의 위치,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반출처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및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 사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추가(안 별표 2 제9호 신설)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함.